

# 예산총칙

제1조 : 2015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417,332,281	12,519,968
1. 일반회계	402,762,691	12,082,881
2. 특별회계	14,569,590	437,088
의료보호기금	914,307	27,429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2,091,243	62,737
주차장	10,022,499	300,675
주거환경개선사업	268,028	8,041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708,865	21,266
지하수관리	564,648	16,939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4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3,214,602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 :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 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금, 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등 포함)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,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